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

1998. 10. 9 건설교통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버스전용차로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도로의 이용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버스전용차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로변버스전용차로: 도로의 가로변쪽의 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설치한 도로
2.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설치한 도로
3. 역류버스전용차로: 동일 방향의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반대 방향에서 버스만 운행하도록 설치한 도로

제3조(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 시·도지사(시장,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여건과 지하철공사, 도로공사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도 3차선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 운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
2.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교통량조사)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버스전용차로 운영) ①시·도지사는 도로이용의 효율화등을 위

하여 매년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시행구간 및 운영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변 교통여건과 도로여건등을 감안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구간과 운영시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6조(버스전용차로 운영계획수립) ①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내용을 포함한 버스전용차로 운영계획(신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매년 11월말까지 수립하고 동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 지도단속) ①시·도지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무인카메라의 설치확대 및 신고엽서제등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세가로 진출입) 시·도지사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노면 표시인 “정차금지대표시”를 적극 활용하거나 Set Back을 설치하여 세가로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지침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이 지침에 의한 버스전용차로로 본다.

③(다른 지침의 폐지) 도운 33120-960('92.12.31)로 시달한 버스전용차선 설치 및 운영지침중 “우리나라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 과 도운 91107-969('94.12.9)로 시달한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및 조기시행 지침” 는 이를 폐지한다.